

[붙임1]

단체의 선거운동 및 낙천·낙선운동 사례 안내

1. 단체의 선거운동

① 법규요약(법 §87, §108의3)

- 단체는 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다만, 법 제59조에 따른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가능함.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

- 국가·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
 -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업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하 이 항목에서 '후보자등'이라 함.)이 임원으로 있거나, 후보자등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후보자등이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
 -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
-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정당·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비교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음. 이 경우 지지하는 정당·후보자를 함께 공표하여야 함.

☞ 벌칙조항 : §255①

2 사례 예시

가. 지지·반대 후보자 결정·공표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 또는 그 단체들의 공동기구가 내부회원만을 대상으로 내부규약 등에서 정한 통상적인 의사결정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지할 후보자를 결정하는 행위
 - ⇒ 통상적인 단체 내부의 의사결정 범위를 넘어 일반 선거구민을 선거인단 또는 국민배심원단으로 모집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통해 지지후보를 결정하거나, 단체 간 공동기구를 새로이 결성하여 지지하기로 결정한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는 위반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지지후보를 결정한 후 자체 홈페이지에 지지 후보의 이름과 지역구 등을 표시하여 알리는 팝업(Pop-up)을 게시하거나 이를 클릭하면 지지후보의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조치하는 행위
-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상대로 후보자의 이력과 정책공약 홍보, 지지·선전 등 일체의 행위 없이 단순히 투표를 통해 지지할 후보자를 정하는 행위
- 관계법령 및 「조합규약」의 절차에 따라 노동조합 직무와 관련하여 개최된 조합원 총회나 대의원회의 등 집회에서 통상의 의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지지할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하여 토의하고 이를 결정하는 행위
-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하는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기자회견·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지지하는 후보자를 공표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단체가 일반선거구민을 단일화 선거인단으로 모집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통해 지지할 단일후보자를 결정하는 행위
- 정당과 시민단체 또는 일반시민들이 공동후보자를 선출하고 그 선출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구를 구성하는 행위

- 지지할 정당이나 후보자를 결정한 후 노동조합의 통상적인 의사결정방법·절차 및 통지방법 등을 벗어나 별도의 인쇄물·시설물·집회 등을 이용하여 알리는 행위
 - ⇒ 노동조합의 통상적인 기관지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대부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하여 지지·선전·반대하는 것인 경우에는 법 제93조에 위반되는 인쇄물 등에 해당
 - ⇒ 통상적·정기적인 발행주기·수량·면수·배부범위 등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93조 및 제95조에 위반되는 탈법적인 인쇄물 내지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에 해당
- 단체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거구민인 회원들의 모임에서 정견을 발표하게 하고 소속 회원들의 투표를 통하여 후보자를 선출하는 행위

나. 단체의 내부 활동

할 수 있는 사례

- 단체가 그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하여 후보자에게 서면 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사실을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방법에 따라 소속 회원에게 알리는 행위
- 옥내 등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에 대하여 찬성·반대의 내부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소속 구성원만 참석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단체가 구성원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이나 지지·반대를 유도하는 내용을 부가하여 서명을 받는 행위
- 노동조합 사무실에 기존부터 설치되어 있는 전화 외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별도로 전화를 증설하여 전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노동조합이 구성원인 조합원 개개인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결의 내용에 따르도록 권고하거나 설득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를 강제하는 행위(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27 판결)

다. 단체의 대외 활동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 대표자의 명의로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벽보·선거공보에 지지·추천사 게재, 방송연설과 공개장소 연설·대담 지원연설, 전화·전자우편·각종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 등을 이용한 지지 권유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하는 행위
- 단체가 그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선거공약을 철회 또는 채택하여 줄 것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건의·요구하는 행위
 - ⇒ 다만,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그 선거공약을 반대하거나 규탄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하거나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법 제107조 또는 제254조에, 그리고 집회가 선거기간 중에도 계속될 경우 법 제103조에도 위반되며, 단체가 건의한 공약자료를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가 채택한 사실을 신문광고하는 행위도 위반

할 수 없는 사례

- 정당·후보자의 정책에 대하여 찬성·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이나 표시물·광고물 등을 거리나 단체가 사용하는 건물의 외벽·차량에 게시하거나 단체 회원 등의 옷에 새겨 이를 착용하는 행위
- 단체가 신문·방송광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서 광고(배너, 텍스트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수막을 사업장내 또는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부산고법 2004. 11. 17. 선고 2004노 787 판결)
- 사전에 일반선거구민에게 지지선언 관련 기자회견 개최사실과 장소를 고지하고 그 장소에 연단·확성기를 설치·사용하거나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인쇄물 배부, 동영상 상영 등 기자회견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경선캠프측 또는 특정인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지지선언을 권유·유도하는 행위

2. 낙천·낙선운동

① 법규요약(법 §58, §87)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으나, 단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넘는 범위에서는 선거운동이 되어 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허용됨.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등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기간은 선거운동기간 내여야 하므로 그 행위 시점이 선거운동기간 개시 전이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여 위법하며, 선거운동의 방법에 있어서도 선거법 제7장 선거운동에 관한 관련 규정 등에 의해 금지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음.

② 사례 예시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이하 “단체”라 함.) 낙천·낙선대상자를 결정하고 기관지·소식지·내부문서·게시판 등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 방법에 따라 소속회원에게 알리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단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모바일메신저 등 포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낙선운동을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단체가 낙천·낙선후보자 명단을 게재한 홍보물이나 별도의 유인물 등을 제작하여 거리집회,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배포하고 유권자를 상대로 지지서명운동을 하며, 낙천·낙선운동의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배포·부착하는 행위
-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공표하는 행위

-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별도의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의 방법으로 일반 선거구민에게 알리는 행위
-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낙천·낙선대상자를 공천한 정당을 규탄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 단체가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거나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낙선대상자 명단 등을 전송하는 행위
- 낙선대상자 명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게시하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피켓·현수막·인쇄물·광고·집회·서명운동·호별방문 등의 방법으로 낙선운동을 하는 행위

[붙임2]

공직선거법

[시행 2020. 3. 25] [법률 제17127호, 2020. 3. 25, 일부개정]

제58조(정의 등) ①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 2. 16., 2012. 2. 29., 2013. 8. 13., 2020. 3. 25.>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
5. 삭제 <2014. 5. 14.>
6.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전송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05. 8. 4., 2010. 1. 25.>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단체
3.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른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5.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6.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하 이 항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이 임원으로 있거나, 후보자등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후보자등이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

7. 삭제 <2005. 8. 4.>

8.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

②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4. 3. 12.]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1.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담,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2.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3.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2.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0. 1. 25.]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補闕選舉 등에 있어서는 그 選舉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創黨準備委員會와 政黨의 政綱·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 11. 14., 1998. 4. 30., 2002. 3. 7., 2004. 3. 12., 2005. 8. 4., 2010. 1. 25.>

1.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제6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선거연락소장을 포함하며, 이 경우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로 본다)이 제6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2.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 ②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 4. 30., 2005. 8. 4., 2010. 1. 25.>
- ③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신설 1995. 12. 30.>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① 삭제 <2010. 1. 25.>

- ②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 <신설 2005. 8. 4.>
- ③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개정 2010. 1. 25.>
- ④선거기간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다.
- ⑤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선거일전 9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신설 2004. 3. 12.>

제104조(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장소, 대담·토론회장 또는 정당의 집회장소에서 폭행·협박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대담장소 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할 수 없으며, 연설·대담 등의 주관자가 연단과 그 주변의 조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횃불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4. 3. 12.>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①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1. 25.>

1.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이 법에 의한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한 자
2.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
3.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지휘·감독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

②검사 또는 경찰공무원(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이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③이 법에 규정된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후보자 또는 연설원을 폭행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04. 3. 12.>

1. 주모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2.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 부화하여 행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그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닌 물건은 이를 몰수한다.

⑤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5. 8. 4.>

1. 경선후보자(경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로 선출된 자를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체포·감금한 자
2.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
3.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지휘·감독을 받는 자에게 특정 경선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

⑥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다수인이 경선운동을 위한 시설·장소 등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경선후보자를 폭행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신설 2005. 8. 4.>

1. 주모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3.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여 행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